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노르웨이왕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9년 6월 13일 오슬로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노르웨이 왕국 정부(이하 “노르웨이”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항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항

연락기관

1. 협정 제14조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노르웨이에서는,

이 행정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노동복지청.

2. 연락기관은 양 체약당사자 실무기관 간 연락을 원활하게 하고 이 약정에서 규정된 의무를 진다.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연락기관은 관련 당사자나 당사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는 물론 서로 간에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연락기관은 협정의 적용에 있어 상호 협조한다.

제 2 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 3 항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된다는 것과 유효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에 기초하여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

2. 협정 제6조제2항에 언급된 동의는 협정 제6조제1항에 규정된 면제기간이 끝나기 전에 요청된다. 이 요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출된다.

3. 노르웨이에서는 이 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NAV 사회보험・보험료국이 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항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연락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5.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자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6. 노르웨이에서는 이 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가.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례보조금은,

NAV 가족급여・연금국

나. 장애급여는,

NAV 근로・급여국

제 5 항

의료검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 가능한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그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발생 비용의 세부 명세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항 제2호를 적용한 결과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4. 노르웨이에서는 이 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NAV 근로・급여국이 된다.

제 6 항

급여 지급

1. 연락기관은 자격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하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7 항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항에 따라 각자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자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에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지급된 총 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간에 공동으로 결정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8 항

연락기관 협조

이 행정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절차에 대해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9 항

추가 원칙

이 행정약정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창설하지 않는다.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자 법령의 틀에서만 이행된다.

제 10 항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노르웨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노르웨이왕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날짜 : _____

장소 : 세종

날짜 : _____

장소 : 오슬로